아태연구 제16권 제2호
2009년 12월 30일 pp.183~202

영국-프랑스의 영토 갈등 및 분쟁에 관한 고찰[1)]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의 경우-

이 종 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목 차 >

I. 들어가기
II. 명칭 표기에 대한 국제수로기구의 판결
III.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IV. 영해 경계선 협약문
V. 나가기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 영국해협(English Channel), 도버해협(Streait of Dover), 국제수로기구(IHO), 국제사법재판소(ICJ)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논쟁이 되어왔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되고 있는 영국해협(English Channel)/라망쉬 해협(La Manche)과 도버해협(Dover Strait)/칼레 해협(Pas de Calais)에서의 영토분쟁에 관한 인과관계, 즉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토갈등에 관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주장이나, 국제기구의 판결 및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토갈등 및 분쟁에서 양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노력이 분쟁 해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양국이 내세웠던 증거 및 주장, 협정/조약문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영해 명칭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례적으로 결론내고 있듯이 인접국가의 '병용표기' 라는 것으로 해결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보다도 더 크게 양국 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나 영해 경계선이다. 이러한 영토분쟁해결에 있어 국제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정치적, 전략적 부분들과 국제사회에서의 대처, 즉 판결이나 그 이유, 구체적인 협정문의 내용을 찾아 제시하였다.

www.kci.go.kr

1) 본 논문은 2007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임을 밝힌다.

Ⅰ. 들어가기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특히 영토, 영해 갈등 및 분쟁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사안이 갖고 있는 복잡한 역사, 민족, 문화, 지정학적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까지도 영해 명칭, 대륙붕 경계 및 영유권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거의 유사한 유형의 영토분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영토분쟁은 1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역사와 맞물려 있다. 위 두 지역은 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륙붕의 경제개발(특히, 석유)로 인한 소유권의 배분, 관광지역, 지방행정조직, 민족의 정체성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지이다.

본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논쟁이 되어왔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되고 있는 영국해협(English Channel)/라망쉬 해협(La Manche)과 도버해협(Dover Strait)/칼레해협(Pas de Calais)의 영유권 및 영해 분쟁에 관련해서 국제기구에서의 판례와 협정문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일어난 분쟁의 사례를 통하여 우선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국 간 영해명칭 문제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실제로 이보다도 더 크게 양국 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해의 경계선 분할권이나 영유권에 관한 분쟁 판례를 국제기구의 판결이나 협정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영해 경계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각 해협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위해 양 국이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내린 결정, 즉 판결문 및 협정문 자료들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세분화하여 기술할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이 1066년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불해협을 정복한 후로 양국의 영토분쟁에 관한 인과관계, 즉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토갈등에 관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Ⅱ. 명칭 표기에 대한 국제수로기구IHO의 판결

유럽의 북서쪽 대서양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해협 혹은 라망쉬 해협(영어로는 English Channel, 불어로는 La Manche라 칭함)은 프랑스 북해안과 영국 남해안을 구분하는 대서양의 지류에 해당한다. 서쪽에서는 너비가 180㎞에 이르지만 동쪽으로 가면서 그 너비가 좁아져 영국의 도버 해협과 프랑스의 칼레시 사이에서는 너비가 34㎞ 정도이고, 도버 해협의 동쪽 끝에서 북해와 이어진다. 영국제도의 주도인 그레이트브리튼 섬의 남쪽은 영국해협이다. 북서쪽으로는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와 접하고 있다. 이 해협 명칭은 18세기 초부터 사용된 명칭으로, 16세기 이후 네덜란드 해도(sea map)에 'Engelse Kanaal'라고 표기 된 것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전에는 'British Sea' 로 알려져 있었고, 2세기의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

www.kci.go.kr

(Ptolemy)에 의해 'Oceanus Britannicus'로 불리었다. 같은 명칭이 1450년도 즈음의 이탈리아 지도에서 'Canalites Anglie'의 대안으로 쓰였는데, 이 때 '해협(Channel)'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Collect Britain, "Map Of Great Britain, Ca. 1450") 프랑스어의 명칭은 17세기부터 사용 된 'La Manche'로, 소매와 같은 해협의 모양을 빗대어 이렇게 불려졌다.(Encyclopædia Britannica. 2007)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명칭의 본래 의미는 '해협(the channel)'이며, 스코틀랜드의 해협(The North Minch 북해))을 명명한 켈트어(Minch)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Room 1987, 6) 브르타뉴에서는 'Mor Breizh(브르타뉴의 바다)'로 알려져 있다.

도버해협 혹은 칼레해협(영어로는 Dover Strait, 불어로는 Pas de Calais)은 영국(북서쪽)과 프랑스(남동쪽)를 가르며 영국해협(남서쪽)과 북해(북동쪽)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이다. 해협의 너비는 30~40㎞이고 깊이는 35~55m에 달한다. '칼레'는 프랑스 북부 도버해협에 위치한 작은 항구도시이다. 영국 사람들은 도버해협이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칼레해협이라고 일컫는 영불해협의 정식명칭은 '채널(Channel)'이라 하며, 이 해협을 육로로 연결시키는 터널의 공식명칭은 '채널 터널(Channel Tunnel)' 또는 채널과 터널을 합성한 신조어인 '처널(Chunnel)'로 명명된다. 이 해협은 많은 역사적인 해전들이 있었던 곳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해전은 영국의 스페인 무적함대 격퇴(1588)일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불로뉴는 주요 군사 기지였고, 도버해협은 '도버 정찰(경계)'의 사령부로 그 곳의 해운을 보호했다. 1940년에 던커크에서 철수하던 연합군은 해협을 건너 도버로 갔다. 도버라는 명칭은 본래 '물(the waters)' 혹은 '시내(the stream)'라는 의미였다. 프랑스어로 Le Pas-de-Calais는 프랑스 행정구역으로 영국으로부터 분리된 해협이란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은 Nord-Pas-de-Calais 지역의 일부분이다. Le Pas-de-Calais 는 프랑스혁명 때 형성된 83개의 행정구역 중의 하나이다. 1790년 3월 4일에 1789년 12월 22일에 비준된 법안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체제정부는 대부분의 아미엥(Amiens) 지방을 이곳에 통합시켰다.

국제수로기구(IHO)는 1921년 출범 이후 바다명칭을 둘러싼 나라 간의 분쟁이 계속되자, 1974년 "몇 개 주권국가의 영향 하에 있는 바다 명칭이 한 이름으로 통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된 새 이름이 나올 때까지 관련 국가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모두 표기한다"는 결의안(IHO Technical Resolution(A4.2.6)을 채택했다. 또 국제적으로 지명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총괄하고 있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UNCSGN)는 1977년 제3차 총회에서 "복수의 주권 국가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하나의 명칭으로 통용되지 않을 때 새 명칭이 합의될 때까지 복수 명칭으로 표기한다"는 결의안(Ⅲ-20 Names of Features beyonds a single Sovereignty)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5회 동해 지명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유엔 지명전문가회의(UNGEGN: United Nations Group of Ex perts on Geographical Names)[2] 의장 피터 레이퍼(Peter E. Raper)가 "하나의 공통 지명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나라가 쓰는 지명을 받아들여야 한다"(1999년 7월)는 유엔 결의안을 소개하면서, 지명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 "역사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 전 세계 지역(바다나 땅의 이름)명칭 표기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상위 기구인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 제출하는 유엔 산하 기구

www.kci.go.kr

이런 원칙에 따라 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1929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3판이 1953년, 그리고 거의 반백년 만인 2007년에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제4판을 위해 지난 2002년 8월 초 완성했던 최종안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바다 명칭은 대부분 병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마찰을 빚었던 '도버해협(Dover Strait)'은 '도버해협 또는 칼레해협(Dover Strait or Pas de Calais)'으로, '영국해협(English Channel)'은 '영국해협 또는 라망쉬(English Channel or La Manche)'로 표기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인 '비스케이만(Bay of Viscay)'도 '비스케이만 또는 가스코뉴만(Bay of Viscay or Gulf de Gascogne)'으로 바뀌었다.[3)]

Ⅲ.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영국해협의 영국령 저지(Jersey) 섬과 프랑스령 쇼지섬(Chausey) 사이에 위치한 에크레오와 맹키에르(Minquiers and Ecrehos) 군도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영국의 국권을 인정한 1953년까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오랫동안 벌어진 영유권 논쟁이었다. 20세기 후반에 이 논쟁은 다시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 섬들의 국권은 대륙붕의 경제개발(특히, 석유)에서 소유권의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풍경, 화훼산업과 온화한 해양 기후로 인해 영국해협은 인기 있는 휴양지가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의해 점령당했던 유일한 영국 영토인 이 섬들은 목축으로 유명하고, 과일, 꽃, 토마토 그리고 감자 수출로도 유명하다. 이 섬들은 면세 지역이어서 수출품은 영국의 관세장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영어와 불어가 공통적으로 쓰이며(불어의 사용은 감소되고 있음) 노르망디 불어 방언이 존재한다. 저지(Jersey)에 있는 세인트 헬리어(St. Helier)와 건지(Geurnsey)에 있는 세인트 피터(St. Peter) 항구는 이 섬들의 주요한 인구 밀집지구이다. 이 지역은 75 평방 마일(194 평방 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01년 집계 상 149,878명이다.

이 분쟁은 멩키에르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1년 12월 5일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어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하였다.

3) 1. North Sea : 영국·프랑스·덴마크·네들란드.벨기에.노르웨이.독일로 둘러싸여 동해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오늘날 '북해(North Sea)'의 경우 '영국해(England Sea)', '독일해(German Sea)', '덴마크해(Denmark Sea)' 등으로 제각각 불렸지만, 관련 국가들의 합의를 거쳐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에서 '북해'로 확정. 2. Dover Strait or Pas de Calais :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마찰을 빚었던 '도버해협(Dover Strait)'은 '도버해협· 칼레해협(Dover Strait or Pas de Calais)'으로 병기 3. English Channel :'영국해협(English Channel)'은 '영국해협 또는 라망쉬(English Channel or La Manche)'로 표기. 4. Bay of Viscay or Gulf de Gascogne :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인 '비스케이만(Bay of Viscay)'은 '비스케이만 또는 가스코뉴만 (Bay of Viscay or Gulf de Gascogne)'으로 표기. 6. Arabia Gulf : Saudi Arabia 와 Iran사이 Str. Hormuz 안쪽의 바다이름은 과거 Persian Gulf였다. Persian는 과거 Iran의 나라 이름이다. Saudi Arabia, Kuwait 등 인접 국가들은 자기들의 바다이름을 과거에 이 주변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Persia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반대하여 Arabia Gulf로 변경 표기.

www.kci.go.kr

양국은 모두 양 도서에 대해 원시적 권원을 주장하고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기준 일을 선택,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의 결정적 중요성, 실효적 점유를 입증하는 국가적 기능의 구체적 발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영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19세기 초 이 제도에 대한 영국 형사재판권 수차 행사, 동 지역에 건축된 가옥에 대한 과세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지방정부 규정을 근거로 국가적 기능이 유효하게 발현한 것으로 보고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John McHugo 1986, 20~23)

1. 영유권에 관한 양 국가의 주장

1) 영국의 주장

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근원의 취득이 1066년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정복에 의해 이 섬이 해협 안에 있던 여러 섬과 함께 노르만디 공국에 통합되었으며, 이 통합은 프랑스왕 필립 아우구스투스가 대륙 노르만디를 점령한 1204년까지 계속되었고 필립왕의 해협 내 여러 섬의 점유 기도는 실패하였으므로 여전히 영국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명령서에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구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하였다.

2) 프랑스의 주장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 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존(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섬에 대 한 고유의 지명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www.kci.go.kr

2.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4)]

1) 권원 없는 주권의 획득

주권의 국제적 정의에 따르면 영토 획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권원에 근거한 획득(Acquisition with Title)'이며 다른 하나는 '점유에 따른 획득, 즉 권원 없는 획득(Acquisition without Title)'이다. 점유에 근거한 소유권과 대비하여 권원에 의한 소유권 개념은 팔마스(Palmas)섬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은 섬의 영토주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만약 영토의 일부분의 주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난다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권원, 양도, 정복, 점유 등을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영유권에 대해 다른 국가가 제시하는 것보다 우세한 것이어야 한다."(Scott 1932, 92) "영토문제는 특별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획득된 소유권이 사실상의 소유를 압도할 것이지만 이는 잘 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Scott 1932, 94)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이전의 영토획득과 권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선점과 권원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의 여름별장으로 떠났다고 하자. 이듬해 돌아왔을 때 별장을 토지 불법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영토가 공식적으로 획득되었다면 전쟁에서 패전국에 의해 영토가 양도되었더라도 그 영토는 본래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다. 만약 영유권을 가진 국가가 영토를 사용하지 않고 거주하지도 않으며 개발하지 않은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몇 가지 규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가 '권원, 양도, 정복, 점유'를 소유한 것에 대한 주장을 목록에 기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우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확실한 권원을 소유하지 않고 할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누구도 섬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지 않으므로 점유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지와 국가 기능의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행사 및 발현, 또한 이러한 권한을 입증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과 같은 다른 요소들로부터 모든 판결이 내려진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는 양도조약과 같은 권원에 대한 특별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지"와 "국가 기능의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행사 및 발현"이라는 두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권한을 끊임없이 발현하는데 근거한 것이다. 이를 '권원 없이 획득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는 '권원에 따른 획득보다 훨씬 더 다루기 힘든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맹키에르와 에크레오의 영유권 논쟁에서 재판장은 두 가지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영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로 재판장은 아키펠라고(Archipelago) 영해 군도[5)]의 자연적인 결합을 고려하였고, 두 번째로는 영국이 보여준 지속적이고 강렬한 소유 권리와

4)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분쟁판례는 영불문제가 지금까지 유일한 판례이다. 1950년 12월 특별협정을 체결, 1951년 12월 5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였다. c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1953), Johnson, D.H.N.(1954), Weissberg, G.(1963), ICJ Reports(1953).

5) 영국해협에 있는 아키펠라고 군도(2005년 건립, 156,000명의 인구)는 폭 75㎡, 길이 10㎡으로 영국 연안 남쪽 80마일(130km), 프랑스의 쌩 말로 만 입구에 위치해 있다. 섬들은 영국 국왕의 보호령에 있고(엄

이에 반해 훨씬 덜 적극적이었던 프랑스의 태도를 고려하였다. 영국에 의한 강렬한 소유 권리는 심지어 지방행정, 사법권, 군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서 나타났다. 국가가 만일 확실한 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엄밀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영토의 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유권 주장은 토지에 대한 불법점거자의 권리나 취득시효의 개념에서 차용할 수 있다. 국제법에서 취득시효란 "국제질서에 따라, 역사적 발전의 영향 아래 필수적이라고 여겨질 때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권행사에 따른 영토국권의 획득"으로 정의된다.(Oppenheim, International Law 576) 이는 만일 어떤 물건이 방치된 채로 있다면 그것을 주워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물건이 항상 그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그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부표와 등대 설치 논쟁

맹키에르와 에크레오 사건에서 이 섬들과 관련된 영유권 논쟁은 국제사법재판소 이전에 이미 논의되었다. 프랑스에 의해 이 섬들에 세워진 등대와 부표들에 관한 논쟁은 프랑스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주요한 쟁점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어떤 조약도 어떤 나라의 입장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고, 이전에 맺어진 어떤 조약에서도 이러한 극소의 중요성을 띤 작은 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관은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의 어떤 반대 충돌 없이 오랫동안 부표와 등대의 유일한 권한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에 등대나 부표의 설치라는 사실만으로는 영유권 주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주장에 영국은 부표와 등대와 같은 공공사업은 영국 선박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러한 행동과 태도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UN, 맹키에르와 에크레오 사건, 666) 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입장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프랑스가 세운 등대와 부표는 암초 밖으로 설치되었고, 맹키에르와 에크레오 섬에서 행한 프랑스의 그러한 행동과 태도는 항해를 돕기 위해 선박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므로 그것은 프랑스의 국권의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섬에 등대나 부표 설치

격히 영국의 일부분이 아님), 섬들이 노르망디 공국의 일부였을 때 1066년 노르망디 족의 정복 이래로 영국 국왕에게 소속되었다. 작은 섬들과 여러 암초들과 바위와 함께 4개의 주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지(Jersey), 건지(Guernsey), 앨더니(Alderney), 사크(Sark) 이다. 이 섬들은 두개의 구별된, 서로 다른 제도를 갖고 있는 저지와 건지 관할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법과 관습에 따라 이 섬들은 운영된다. 앨더니(Alderney), 사크(Sark), 헤름(Helm), 제투(Jethou), 리투(Lithou) 그리고 브레쿠(Brecqhou)는 건지(Guernsey)에 속해 있고, 에크레오(Echrehous) 암초와 맹키에르(Minquiers)는 저지(Jersey)에 속해 있다. 섬들은 2개의 행정 관할 구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저지구역으로 전체 섬 인구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건지(Geurnsey)로 저지를 제외한 모든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관할 구역은 국왕에 의해 임명된 섬 관리자가 있다. 그는 섬의 주요한 행정, 사법권을 갖고 있다. 기독교화는 세인트 헬리어(St. Helier)와 세인트 샘슨(St. Sampson)의 노력을 통해 대규모로 6세기에 일어났다. 10세기 때, 섬들은 노르망디 공작의 소유가 되었다. 노르망디 정복에서 그들은 영국 국왕과 결합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필립 2세가 노르망디 공국을 몰수할 당시 이 섬들은 1204년 영국과 존 국왕의 통제로 남게 되었다. 프랑스 인들은 14세기와 그 이후 다시 섬을 관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www.kci.go.kr

가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3) 아키펠라고 논쟁

이미 언급한 맹키에르와 에크레오 사건에서 재판장은 아키펠라고 군도의 자연적인 결합에 주목하였고, 자연적인 결합으로 이뤄진 아키펠라고는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의 영토라는 판결을 내렸다.(UN, 맹키에르와 에크레오사건, 668) 아키펠라고의 정의는 단지 근접성보다 더 많은 고려요인들을 덧붙인 것이다. 영해법은 아키펠라고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섬의 일부분을 포함한 섬 집합은 섬들과 매우 근접하여 상호연관성이 있는 다른 자연적인 특성과 영해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해와 다른 자연적인 특성들은 본질적인 지리학적, 경제적, 정치적 실체를 형성하거나 역사적으로 상호 연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UN, 영해법. N.4, 46조)

4) 영국의 주권으로 인정

양국은 모두 양 도서에 대해 원시적 권원을 주장하고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증거 채택 기준 일을 선택,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의 결정적 중요성, 실효적 점유를 입증하는 국가적 기능의 구체적 발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영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간접적 추정이 아니고, 이 섬의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증거이다. 또 이 섬에 대한 수로측량 조명 및 부표의 관리, 수상 및 공군상의 시찰, 수력발전계획 등의 사실은 프랑스[6]가 이 섬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에 불충분하다(...)"(1953년 11월 17일 ICJ)는 판결,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19세기 초 이 제도에 대한 영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동 지역에 건축된 가옥에 대한 과세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지방정부 규정을 근거로 국가적 기능이 유효하게 발현한 것으로 보고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구하게 되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 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하여 영국이 승소했다.

프랑스가 제기한 어업협정에 관한 이 부분의 주장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배척한 직접적 이유를 보면, 프랑스는 굴채취에 관한 영불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된 1839년 8월 2일자를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으로 주장하면서도 이 일자 이 후의 여러 사건을 주권적 권한 행사의 증거로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법원이 프랑스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는 맹키에르와 에크레오섬에 관해서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결정적인 주권적 권리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839년 8월 2일자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발효된 굴채취에 관한 어업협정은 맹키에르와 에크레오에 관한 영국의 영유권을 배척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프랑스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문제된 내용은 3개의

6) 실제로 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프랑스는 1839년 8월 2일에 체결된 양국 간의 어업협정에서 문제의 섬들이 공동어로구역에 포함되었든 사실을 들어 동 일자(日字) 이후 영국이 행사한 모든 영유적 국권 행사의 법적 효력이 부인(否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www.kci.go.kr

조항으로서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과 영국 저지섬의 3해리 범위 수역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각기 전속적으로 굴채취를 하기로 하고(제1조 및 2조) 그 나머지 수역에서는 공동으로 어로(漁撈)키로 합의한 것(제3조) 7)이다.

또한 프랑스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것을 영유권 포기라고 판단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결국 프랑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영국이 행사한 모든 영유적 국권행사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들 분쟁도서를 영국 영유(領有)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이유는 영국정부가 저지 왕립재판소와 지방행정당국의 조치들을 통하여 이 두 개의 섬에 대해서 사법권, 지방행정권 및 입법권(立法權)을 행사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Ⅳ. 영해 경계선 협약문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갈등 및 분쟁해결의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 당시 양국이 맺었던 주요 협약문(부록 1 : 프랑스-벨기에 국경으로부터 프랑스-스페인 국경까지 북해, 영불해협과 대서양에 인접한 공화국 영토 해안 밖의 경계지역 확정, 부록 2 :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공화국과 영국과 북아일랜드 정부 사이의 협정, 부록 3 : 도버해협 영해의 경계선 확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공화국 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살펴보면 양국 간의 정치적, 전략적 측면에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처방안 및 구체적인 협약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유엔산하 해양법위원회(DOALOS)/유엔 산하 법사문제사무국(OLA)에 나와 있는 양국 간의 체결된 1976년, 1982년, 1988년의 법령은 다음과 같다.

---

7) 제3조의 내용 : "The oysters fishery outside of the limits within which that fishery is exclusively reserved to french and british subjects respectively, as stipulated in the preceding articles, shall be common to the subjects of both countries.". 이 제3조의 규정으로 맹키에르와 에크레오섬을 포괄조의 모종의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었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영국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ICJ는 본건 판결의 목적상 이러한 논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공전와 으로 동 1839년 어업협정상 공동어로구역과 같은 것이(설사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다른f bot제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ll b시를픠 것이다. 영국영토인 저지섬의 부속 도서로서의 증거가 확실픠 맹키에르와 에크레오의 주변 수역에서 이 두어로구역상반된 위치로 볼 때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굴을 채취키로 합의한 협정만으로 이 인근반된 위치공동씁는가할동어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à, 것이다. 1875년에 발급된 영국의 재무영장은 저지 으로할범위 H위치에크레오를 포함시키른f 었다. 법원은 이이 먜백한 영국의 주권적 행위로 간ü1875년그런데 프랑스는 이이 먜백한 1839년 영불간 어업협정 위반이떴른f항Xding af항X에서 프랑스는 에크레오에 관한 영유ipul주장하지 않았75년그 이유는 그 어업협정 당시(1839년)에 이 섬을 무주지(無主地)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에크레오섬의 경우에 "1839년 어업협정에 근거한 프랑스의 항변은, 문제의 협정 속에 그 경우에 당연히 기대되는 영유권에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의 입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된다.

www.kci.go.kr

4-1 프랑스-벨기에 국경으로부터 프랑스-스페인 국경까지 북해, 영불해협과 대서양에 인접한 공화국 영토 해안 밖의 경계지역 확정에 관한 1976년 7월 16일의 법률에 준한 제 77-130호 법령

1976년 7월 16일의 법률 1조에 명시된 경제지역은 프랑스-벨기에 국경으로부터 프랑스-스페인 국경까지, 영해의 경계 바깥으로부터 이 경계를 넘어 해상 188마일까지, 인접한 국가들과의 경계 확정 협정에 따라 북해, 영불해협, 그리고 대서양에 인접한 공화국 영토 해안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1조

경제지역과 관련되어 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은 현 법령이 공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조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조약의 규정과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외국의 선박은 1888년 3월 1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에 언급된 경제지역 안에서 조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조약의 규정과 시행 규칙, 국제 협정, 그리고 프랑스 시민법에 명시된 조건과 부합하는 특정 국가의 선박들에게는 조업 허가가 주어진다.

3조

1조에 명시된 경제지역에서 불법을 범한 선박에 대해서는 1852년 1월 9일 5조 6항, 6조 6항, 7조 1항, 8조, 9조와 위에 언급된 1888년 3월 1일 법률에 따라 600~1,000프랑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4조

법무부, 내무부, 외무부, 재경부, 국방부, 노동부, 산자부, 환경부, 교통부가 현 법령의 실행과 관련된 책임을 지니며, 현 법령은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 관보에서 출판되어야 한다.

출처 : DOALO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OLA(Office of Legal Affairs) - UN

4-2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 ;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 1,000미터 외부에서 프랑스와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각각 부속된 대륙붕 일부의 경계가 1975년 7월 10일 파리에서 승인된 각 국 정부간 협정에 준한 1977년 7월 30일과 1978년 3월 14일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해졌음을 고려하여, 1975년 7월 10일의 협정의 전문에 “각 당사국에 부속된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영불해협의 대륙붕 경계 확정에 관해 두 당사국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www.kci.go.kr

명시되었음을 고려하여,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1조

1. 본 협정의 2조에 준하여,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프랑스와 영국에 부속된 대륙붕 사이 경계는 다음과 같은 좌표의 지점들을 포함하는 항정선이 되어야 한다.

위치	위도	경도
1.	50°07′29″N	00°30′00″E
2.	50°13′13″N	00°15′30″E
3.	50°14′12″N	00°02′14″E
4.	50°19′41″N	00°36′12″E
5.	50°23′22″N	00°46′39″E
6.	50°38′38″N	01°07′26″E
7.	50°47′50″N	01°15′28″E
8.	50°53′47″N	01°16′58″E
9.	50°57′00″N	01°21′25″E
10	51°02′19″N	01°32′53″E
11.	51°05′58″N	01°43′31″E
12.	51°14′27″N	01°57′18″E
13.	50°19′38″N	02°01′48″E
14.	50°30′14″N	02°06′51″E

2. 1항에 명시된 위치 I 부터 Ⅳ까지의 지점은 유럽 기준점(1950년 1차 개정)에 의해 정해졌다.
3. 1항에 명시된 경계선은 이 협약에 부속된 차트위에 실제로 그려져 있다.

2조

1. 위치 No. 1은 1975년 7월 10일의 협약에 따라 성립된 중재재판소의 1977년 7월 30일 판결문 1조에 명시된 위치 A와 동일하다.
2. 위치 No. 14를 넘어선 지역의 경계는 확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위치 No. 14에서 양 당사국과 벨기에에 부속된 대륙붕의 경계를 잇는 삼각지점까지의 경계선이 위치 1과 14사이의 경계선 확정을 위해 활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그려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양자 모두 동의했다.

3조

1. 본 협약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 증서는 가능한 한 빨리 파리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본 협약은 비준 증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www.kci.go.kr

상기에 서명된 일자에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이 조약에 승인하였다.

협정문은 1982년 7월 24일 런던에서 불어와 영어로 된 두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이 두 개 모두 동일한 권한을 지닌다.

출처 : DOALO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OLA(Office of Legal Affairs) - UN

4-3. 1988년 11월 2일 도버해협 영해의 경계선 확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

프랑스와 영국에 부속된 대륙붕의 경계가 1982년 6월 24일 런던에서 조인된 두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해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에서 정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렇게 정해진 경계를 도버 해협에서 프랑스의 영해와 영국의 영해 사이의 경계로 활용하고자 할 때 다음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1조

1. 프랑스 영해와 영국 영해 사이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좌표의 지점들을 포함하는 항정선이 되어야 한다.

위치	위도	경도
Ⅰ	50°49′30″90N	01°15′53″43E
Ⅱ	50°53′47″00N	01°16′58″00E
Ⅲ	50°57′00″00N	01°21′25″00E
Ⅳ	51°02′19″00N	01°32′53″00E
Ⅴ	51°05′58″00N	01°43′31″00E
Ⅵ	51°12′00″72N	01°53′20″07E

2. 1항에 명시된 위치Ⅰ부터 Ⅳ까지의 지점은 유럽의 기준점(European Datum, 1950년 1차 개정)에 의해 정해졌다.
3. 1항에 명시된 경계선은 이 협약에 부속된 차트위에 실제로 그려져 있다.

2조

위에 규정된 위치Ⅰ과 위치Ⅵ는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에서 각각 프랑스와 영국에 부속된 대륙붕 경계의 새로운 끝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계는 다음의 점들을 포함한 항정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점 1, 2, 3, 4, 5, 6, 7 그리고 Ⅰ, 그리고

www.kci.go.kr

(2) 점 VI, 12, 13 그리고 14,

이 점들은 1982년 6월 24일의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3조

각 계약 당사국은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상기에 서명된 일자에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이 조약에 승인하였다.

협정문은 1988년 11월 2일 파리에서 불어와 영어의 2 개의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이 두 개 모두 동일한 권한을 지닌다.

출처 : DOALO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OLA(Office of Legal Affairs) - UN

V. 나가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영불간의 바다지명 명칭에 관한 문제는 국제수로기구나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을 통해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양국 간의 영해 명칭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1974년, 2002년 국제수로기구 IHO, 1974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1999 유엔지명전문가회의의 결정) 다른 한편 1951년부터 제기된 양국 간의 '영국해협'의 도서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어 왔다. 특히 영국해협의 경우는 영해명칭이나 대륙붕 분할 비율 문제보다는 영유권 문제가 이미 오랜 전부터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국가가 주장하는 근거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영국의 손을 들어준 이유, 즉 영유권이란 것이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양도조약과 같은 권원에 대한 특별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지'와 '국가기능의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행사 및 발현'이라는 두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권한을 끊임없이 발현하는데 근거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맹키에르와 에크로스 제도(Minquiers et Echros)의 경우, 아키펠라고(Archipelago) 영해 군도의 자연적인 결합을 고려하였고, 영국이 제기한 지속적이고 강렬한 소유 권리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프랑스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내세웠던 프랑스에 의해 섬들에 세워진 등대와 부표들은 영유권 주장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의 영토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구하게 됐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 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하여 영국이 승소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www.kci.go.kr

* 부록

부록 1) 프랑스-벨기에 국경으로부터 프랑스-스페인 국경까지 북해, 영불해협과 대서양에 인접한 공화국 영토 해안 밖의 경계지역 확정에 관한 1976년 7월 16일의 법률에 준한 제 77-130호 법령

Page 1

Decree No. 77-130 of 11 February 1977 on the establishment, pursuant to the law of July 16, 1976, of an Economic Zone off the coasts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bordering the North Sea, the English Channel and the Atlantic, from the Franco-Belgian border to the Franco-Spanish border

The economic zone defined in Article 1 of the Law of July 16, 1976 shall extend, off the coasts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bordering the North Sea, the English Channel and the Atlantic, from the Franco-Belgian border to the Franco-Spanish border, from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to 188 nautical miles beyond this limit, subject to delimitation agreements with neighbouring States.

As far as this zone is concerned, the provisions of the above-mentioned Law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present Decree.

Articl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its implementing legislation, foreign vessel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March 1, 1888 as amended, be prohibited from fishing in the above-mentioned economic zone.

However, notwithstanding these provisions, fishing licences may be issued to certain foreign vessel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its implementing legislation, b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by French municipal law.

Article 3

As regards offences relating to fishing committed in the economic zone referred to in Article 1, a fine of from F 600 to 1,000 shall be substituted for the penalties laid down in Articles 5(6), 6(6), 7(1), 8 and 9 of the Decree of January 9, 1852 and in Article 11(2) of the above-mentioned Law of March 1, 1888.

Article 4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er of Economics and Finance, the Minister of Defence, the Minister of Work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Research,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shall be charged, as appropriate, with the execution of the present Decree, which shall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ficiel of the French Republic.

National legislation - DOALOS/OLA - United Nations

출처 : DOALO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OLA(Office of Legal Affairs) - UN

www.kci.go.kr

부록 2)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공화국과 영국과 북아일랜드 정부 사이의 협정

page 1| Delimitation Treaties Infobase | accessed on 14/03/200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sidering that the boundary delimiting the parts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France and to the United Kingdom, respectively, in the area we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out to the 1000 metre isobath, has been defined by the Decision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of 30 June 1977 and 14 March 1978, pursua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signed in Paris on 10 July 1975;

Having regard to the fact that it is declared in the preamble to the Agreement of 10 July 1975 that "agreement in principle has been reach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e delimitation of the por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nglish Channel eastward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appertaining to each of them";

Desiring to define in precise terms the course of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eastward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Subject to Article 2 of this Agreement, the boundary between the parts of the continental shelf which appertain to the French Republic and the United Kingdom respectively, eastward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shall be a line composed of loxodromes joining in the sequence given the points defined as follows by means of their co-ordinates:

1.	50° 07' 29" N	00° 30' 00" W
2.	50° 13' 13" N	00° 15' 30" W
3.	50° 14' 12" N	00° 02' 14" E
4.	50° 19' 41" N	00° 36' 12" E
5.	50° 23' 22" N	00° 46' 39" E
6.	50° 38' 38" N	01° 07' 26" E
7.	50° 47' 50" N	01° 15' 28" E
8.	50° 53' 47" N	01° 16' 58" E
9.	50° 57' 00" N	01° 21' 25" E
10.	51° 02' 19" N	01° 32' 53" E
11.	51° 05' 58" N	01° 43' 31" E
12.	51° 14' 27" N	01° 57' 18" E
13.	51° 19' 38" N	02° 01' 48" E
14.	51° 30' 14" N	02° 06' 51" E

2. The positions of points 1-14 in paragraph 1 are defined on European Datum (1st Adjustment 1950).

3. The boundary line defined in paragraph 1 is illustrated on the chart annexed to this Agreement.

DOALOS/OLA - UNITED NATIONS

www.kci.go.kr

Article 2

1. Point No. 1 corresponds to Point A defined in paragraph (1) of the dispositif of the Decision dated 30 June 1977 rendered by the Court of Arbitration established under the Agreement of 10 July 1975.

2. It has not been possible for the time being to complete the delimitation of the boundary beyond Point No. 14; it is however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at the delimitation from Point 14 to the tripoint between the boundaries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the Parties and to the Kingdom of Belgium shall be completed at the appropriate time by application of the same methods as have been utilized for the definition of the boundary line between Points Nos. 1 and 14.

Article 3

1. This Agreement shall be ratifie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Paris as soon as possible.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ondon this 24th day of June 1982 in the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출처 : DOALO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OLA(Office of Legal Affairs) - UN

www.kci.go.kr

부록 3) 1988년 11월 2일 도버해협 영해의 경계선 확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공화국 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

page 1| Delimitation Treaties Infobase | accessed on 14/03/200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in the Straits of Dover, 2 November 1988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sidering that the boundary delimiting the parts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respectively,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has been defin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signed at London on 24 June 1982;

Desiring to establish a part of that boundary as the limit between the territorial sea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at of the United Kingdom in the Straits of Dover;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boundary between the territorial sea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territorial sea of the United Kingdom shall be a line composed of loxodromes joining in the sequence given the points defined as follows by means of their co-ordinates:

POSITION	LATITUDES	LONGITUDES
I	50° 49' 30" 95 N	01° 15' 53" 43 E
II	50° 53' 47" 00 N	01° 16' 58" 00 E
III	50° 57' 00" 00 N	01° 21' 25" 00 E
IV	51° 02' 19" 00 N	01° 32' 53" 00 E
V	51° 05' 58" 00 N	01° 43' 31" 00 E
VI	51° 12' 00" 72 N	01° 53' 20" 07 E

2. The positions of points I to VI in paragraph 1 are defined on European Datum (1st Adjustment 1950).

3. The boundary line defined in paragraph 1 has been drawn solely by way of illustration on the chart annexed to this Agreement.

Article 2

Points I and VI as defined above shall be the new final points of the boundaries delimiting the parts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respectively to France and to the United Kingdom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These boundaries are composed of loxodromes joining:

(a) points 1, 2, 3, 4, 5, 6, 7 and I, and

(b) points VI, 12, 13 and 14,

as defined by the Agreement of 24 June 1982 and by this Agreement.

DOALOS/OLA - UNITED NATIONS

www.kci.go.kr

Article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force of this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last notification is receiv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Paris this 2nd day of November 1988, in the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출처 : DOALO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OLA(Office of Legal Affairs) - UN

www.kci.go.kr

참 고 문 헌

김명기(1987).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의 분석과 독도문제.”『독도와 국제법』. 서울: 화학사. pp. 53-65.

이한기(1967).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의 연구 -독도문제에 관련된 「실효적 점유」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 제9권, 1호.

Calvert Peter(2004). *Border & Territorial Dispute of the World 2004.* John Harper Publishing.

Cukwurah, A. O.(1967).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Encyclopædia Britannica (2007). “English Channel.”

Huth P.K. and Allee T.L.(2003). *The Democri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1953).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France/United Kingdom).”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Judgment of November 17th.

John McHugo(1986). “How to Prove Title to Territory: A Brief, Practical Introduction to the Law and Evidence,”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Vol. 2, No. 4. pp. 20~23.

Johnson, D. H. N.(1954).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Th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3.

McHugo, John(1965). "How to Prove Title to Territory: A Brief, Practical Introduction to the Law and Evidence."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Vol. 2, No. 4.

Prescott, J.R.V.(1987). *Political Boundaries and Frontiers.* Boston: Allen & Unwin.

Room, A.(1997). *Placenames of the World: Origins and Meanings of the Names for over 5000 Natural Features, Countries, Capitals, Territories, Cities and Historic sites.* McFarland & Company.

Scott, James B. ed.(1932). *Hague Court Reports* (second se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CJ Reports(1953). *The Minquiers-Ecrehos case (france vs United Kingdom) Judgement of November 17th.* pp. 47-58.

United Nations(1983). *The Law of the Sea.*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1953). "The Minquiers and Echros Case (France vs. the United Kingdom)"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_____(1987). *The Law of the Sea: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1970-1984.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New York.

Weissberg, G.(1963).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7.

www.kci.go.kr

<Abstract>

Territorial dispute and the delimitation of territorial sea between U.K. and France

Jong Oh Lee*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U.K-France territorial conflict or dispute and agreement between U.K.. and France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erritorial sea. The arguments for the English Channel(La Manche) and the Streait of Dover(Pas de Calais) are certainly occupied by two countries U.K. and France, as shown by the marine Pliocene deposits far up the Channel on the French coast. So on the reports of IHO, the naming of two borders were called "co-owner" by historic and international factord.

At the case of Minquiers et Echros, the judgements of ICJ by Acquisition with Title, Acquisition without Title, relating to islands and rocks may be advantageous to U.K. interests in the western part of the region. Finally the Agreement of the delimitation of territorial sea between U.K.. and France may also assist to some extent in providing a better basis for reaching agreements on unresolved delimitation problems between opposite and adjacent states in the regions. The 1976, 1982, 1988, 2002 Agreements provides quantitative, albeit somewhat complex, formulate to determine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us solve that particular problem. This states that the problems of ocean space are closely inter-related and need to be considered as a whole. While this is true, the world ocean is too vast and too complex to be treated as a whole for every purpose.

■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1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

* Lecturer,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www.kci.go.kr